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8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등 상위법령 위반사항을 개정하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방법을 개선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기획감사실-3604(2018.5.10.)에 의거 자치법규 정비대상 정비

※ 환경부-3496(2018.10.10)호에 의거 성주군 피해방지단 구성방법 관련조례 검토 결과 반영

2. 주요내용

가. 농업인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4호)
나 인명피해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 개정(안 제9조)
다. 농작물 피해 및 구제금액 산정 기준 개정(안 제11조)
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운영 개정(안 제20조)
마.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신설(안 제20조의2)
바. 대장관리 개정(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주민복지과-58476(2018. 10. 22.)〕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기획감사실-8390(2018. 10. 23.)〕
마. 입법예고 : 의견 없음(예고기간 : 2018. 10. 19. ~ 2018. 11. 8.)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2조제4호 중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을 “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5.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제11조제3항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목 “보칙”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으로 한다.

제20조 제목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운영)”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성주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 중 “자율구제단”을 “피해방지단”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을 따른다. 다만,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 시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포획포상금 지급) ① 피해방지단원 등 사전 방지단원으로 선정된 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고 포획한 경우(자력포획을 제외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

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피해방지단 운영 기간 동안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에 한한다. 다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할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포상금 신청방법 및 지급 대상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량, 포상금 금액은 규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21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22조 중 “갖추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를 “기록·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코자「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과 농작물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 (목 적)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 2 조 (정 의) ----------.
1. “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1. “야생동물”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3 조 제 2 호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농가의 자력구제"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에 의해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을 말한다.	6. ---------- 법 제23조제1항 ----------.
제7조(지급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명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7 조 (지 급 대 상)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야생동물 자율구제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삭 제>
제9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지 급 제 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상이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4.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경우	5.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제11조(피해 및 구제금액 산정 기준) ①·② (생 략)	제11조(피해 및 구제금액 산정 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같은 지번 경작지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은 연1회에 한하고 1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③ ----------500만원----------.
④ 유해야생동물 자력구제와 대리포획에 대한 포상금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에 의해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1. 포획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이하"피해방지단"이라 한다) 운영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할 경우에는 군수가 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포획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량, 포상금 금액은 예산사정과 농작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3. 피해방지단 구성은 야생생물관리협회 또는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의 추천을 받아 관내 모범수렵인을 구성한다.	
제5장 보칙	제5장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
제20조(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운영) 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 야생동물 구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구제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성주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자율구제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피해방지단 ----------.
<신 설>	③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을 따른다. 다만,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 시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의2(포획포상금 지급) ① 피해방지단원 등 사전 방지단원으로 선정된 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고 포획한 경우(자력포획을 제외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피해방지단 운영 기간 동안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에 한한다. 다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할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포상금 신청방법 및 지급 대상 유해야

	생동물의 종류 및 수량, 포상금 금액은 규칙에서 따로 정한다.
<신 설>	제6장 보칙
제22조(대장관리) 군수는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에 따른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신청 및 처리 대장을 갖추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 22 조 (대 장 관 리) ---------- ---------- ---------- 기록·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